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9. 26 선고 2023가단102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하헌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1. 4. 14. 접수 제11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301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12. 13.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4.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 대표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1.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1. 4. 14. 접수 제11059호로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누나인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는 직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1. 4. 14.경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에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4. 7. 이 사건 회사에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17. 4. 7. 이 사건 회사에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 사건 회사와 통모하여 자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방법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철환